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김동춘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 우리의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1. 머리말

국민(國民, nation)은 원래 혈연·관습·문화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권국가 내의 주민을 지칭한다. 국민은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성립된 상대적인 범주이므로, 형성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의 집합체이자 근대국가의 주민으로서 ‘국민’은 봉건국가의 개혁을 통한 국가 내의 투쟁, 그리고 국가간의 전쟁을 통한 국가주권·국민주권의 확립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金東椿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의 형성과정은 인간이 신분적 차별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문명화’ 과정이며, 반면에 국가에 소속될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배제·차별화하며 ‘국민됨’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작업을 수반하였다. 유럽의 경우, 국민국가의 성립은 전쟁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국민 형성과정에서 국가간의 전쟁과 국내의 계급전쟁,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따라 국민의 법적·사회적 지위, 국민의 사회적 성격이 차별화된다. 식민지 경험 이후 국민국가를 수립한 비서구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20세기를 살아온 한민족에게 ‘국민’이라는 말처럼 익숙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한국인들의 역사적 기억과 의식 속의 ‘국민’ 개념은 매우 독특하다. 지난 20세기 내내 우리는 모두 ‘국민’ ‘민족’이라는 말과 씨름하면서 살았다. 국민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단위이지만, 과거 일본제국주의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혈연적’ ‘정치적’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공식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설명되었으나, 엄밀히 말해 ‘국민’은 ‘자유로운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이란 단어가 일제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장기와 키미가요, 전시동원과 군사훈련 등을 연상시킨다면, 박정희 유신체제를 겪은 우리에게는 국민교육헌장과 국정교과서, 교련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경우 ‘국민’은 획일화·명령·통합 등을 상징하고 있다.

현대 한국에서 ‘국민’이 갖는 독특한 성격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강한 혈연적 동질성을 가진 한민족이 전쟁을 거쳐 적대적인 ‘두 국민’으로 분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명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의 민족이 두 국가로 분열되었다는 점에서 ‘결손국가’라는 개념을 동원하기도 하지만,¹⁾ 이 경우 한국 국민의 성격, 한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1) 임현진·공유식·김병국, 「한국에서의 민족형성과 국가건설—결손국가론 서설」,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 지평』, 준봉구법모교수 화갑기념논총, 나남 1994.

의무의 묶음들이 분단국이던 과거 독일과 어떻게 다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20세기 한국에서 ‘국민’의 갖는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험, 1948년부터 이미 시작된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남북간의 상호적대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 한국전쟁은 바로 한국의 국가, 그리고 국민의 성격을 밝히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2. 백성에서 신민, 민족으로

튀니스(F.J. Tönnies)는 가족은 ‘공동사회’의 원형이며, 이러한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인간들에게 가장 커다란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카(E. H. Carr)는 중국사회에서는 최근까지도 가족이 공감의 한계였고 전체 민족이나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충성·헌신은 극히 적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중앙집권적인 관료국가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의 공감의 한계, 생활세계는 가족이었다. 조선조의 유교질서하에서도 양반지배층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조선왕조 혹은 민족이라는 단위보다 가문·가족이라는 혈연집단이 더 중요하고 일차적인 사회단위였음이 분명하다. 백성(百姓)이란, 말 그대로 백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가족들의 집합체였을 따름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은 아니었다. 특히 주자학적 세계관을 가진 조선 유학자들에게는 ‘모든 조선 백성은 중국 황제의 신하’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구한말의 농민출신 의병장 채응언(蔡應彦)은 “이천만 동포는 모두 동방의 중화국가의 신민”²⁾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민족 혹은 국민으로서 일제에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개항기 조선이 러시아·미국·독일 등과 통상조약을 맺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면서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게 된 이후, 조선은

2) 「진동대장 분파대장 채응언 보국 창의문」, 권태익 외 엮음, 『근현대 한국탐사』, 역사비평사 1994, 121면.

‘민국의 일국(一國)’이 되었다.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주권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다. 당시 국가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었으므로 대한제국을 ‘국민’국가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노예제가 철폐되고 신분적 차별이 사라지면서 법적으로는 ‘국민’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의 사상적인 기초가 된 것은 바로 ‘국민주의’의 원칙이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의 공산(公産)”이며 “국민은 국가의 공산을 유(有)한다”³⁾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선각자 지식인들은 신(身)·가(家)·국(國)의 관념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으며, 량치차오(梁啓超)가 중국인들에게는 국가사상이 없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는 가와 지방의 관념만 있었을 뿐 국가나 민족의 관념은 없었다는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여러 논설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국가관념을 비판하면서 ‘국가정신’으로 무장한 ‘신국민’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붕괴하였고, 이제 국민 즉 민족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조선을 병합한 일제는 한반도를 타이완·남사할린 등 여타 식민지와 더불어 외지(外地)라고 명명하여 자신을 지칭하는 내지(內地)와 구별하였다. 그런데 내지인은 유교적 군신관계의 신과 민의 신분관계를 해소한 근대적 국민으로서의 외향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천황에게 절대복종하는 존재인 ‘신민(臣民)’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⁴⁾ 그러나 외지인은 신민의 근거가 되는 일본 내지인의 국적법, 혹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의 호적법을 가졌는데, 조선의 경우 민적법(1909)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메이지민법상의 가족정책을 한국에 적용하여 호주에 의해 통솔되는 가(家)와 호주권 및 호주의 초세대적 계승을 보장하는 가족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즉 국가에서의 천황의 대권과 가에서의 가장권인 호주권을 원리적으로 동일시하고 호주에 대한 순종을 통해 천황에 대

3) 신채호, 「身·家·國의 3관념의 변천」, 『단재 신채호 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77, 154~56면.

4) 윤건차, 「제국신민에서 일본국민으로」,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151면.

한 복종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⁵⁾

그러나 모든 조선인들은 참정권은 물론 초보적 자유와 권리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2등신민’에 불과하였으며, 일본 명절에 국기를 달지 않았다 해서 칼 찬 순사들에게 뺨을 얻어맞고 발길로 채고 교육·취업·임금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했음은 물론, 조선청년들은 ‘노동노예’로, 젊은 여성들은 ‘성노예’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천황의 2등신민’이기를 거부하는 조선인들은 이제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자각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반대로 제국주의 지배를 ‘근대’의 길이라고 파악한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더 철저한 ‘신민’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

독립운동세력은 이제 정치적 국민보다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고, 이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립운동 과정에서 실력양성 혹은 조선인 자치를 주장하던 민족개량주의 진영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내지인과의 동등한 신민, 혹은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였다. 이들 지식인들은 일제 말기에 일시동인(一視同人)·내선일체(內鮮一體)의 기만정책을 받아들여 철저한 신민이 되는 길을 택한다. 윤치호(尹致昊)는 “우리 조선인이 병합 당시에는 일본 ‘국민’으로서 갖난아이에 불과하였으나 병합 이래 29년이 경과하여 일본 국민으로서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어른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 우리도 똑같이 천황폐하의 적자가 되었다고 언명한 것이다. 김활란(金活蘭)은 정병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라고 선전하였다. 일제하의 말단 관리·경찰들은 조선인에게 일본인보다 더 지독한 일본인이 되어 군림하였다.

5) 이승우, 「가족관계법과 유교문화—호주제도를 중심으로」, 성대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유교와 한국사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1999.

6) 윤치호,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 권태억 외, 앞의 책.

8·15해방으로 아직 ‘국민’이 되지 않은 동포, 혹은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윤치호의 자살이 보여주듯이 친일세력들은 천황의 ‘신민’으로 자처한 경력만으로도 그러하지만, ‘민족’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근대 국민(민족)국가의 주역으로 등장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자격미달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들을 장차 수립될 ‘국민국가’의 주역으로 삼으려 했다. 이로 인해 일제시 지속된 ‘민족’과 ‘반민족’ 간의 갈등이 해방 직후 재연되기에 이른다. 즉 ‘민족’과 ‘친일세력’ 즉 혈연과 문화에서는 민족구성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민족’이었던 집단의 갈등이 ‘국가수립’ 운동 차원에서 본격화된 것이다. 1945년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갈등, 46년 대구 10·1사건, 48년 단독정부수립 반대운동과 제주도 4·3사건, 여순사건과 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모두 ‘국민’국가의 주역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이었다.

3. 국민국가 형성과정

‘반공국민’과 ‘빨갱이’: 1948년 제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후 한국에는 일본인과 동화되어 사실상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황국신민’과 국민 혹은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세력, 그리고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어 그냥 천황의 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백성’이 존재했다. 그런데 미군정의 진주와 점령정책, 신탁통치반대운동 등 초기 냉전적 정치환경 속에서 이제 민족과 반민족의 분열은 ‘반공국민’과 ‘좌익’의 대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반민족’은 ‘반공국민’으로 다시 태어나 반공국가 건설의 선봉대로 등장하였다.

해방된 지 3년 만에 ‘민족’은 미래에 건설될 국민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상상의 공동체’로 남겨진 채, 좌익과의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으로 활용된 것이다. 즉 이승만정권은 공산당의 투쟁을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투쟁으로 보아 비판하기보다는 이들이 ‘조국을 남의 나라에 예속시키

려는 반역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

우리 한인들은 다 단군의 후예들인데 한인들 중에서 인면수심(人面獸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남의 나라 속박 아래서 노예 되려고 하는 분자들이 얼마간 있었던 것입니다. (...)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미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미국 백성이 아니고, 영국 백성으로서 공산당 된 사람은 영국 백성이 아니고, 한인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한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⁷⁾

즉 '우리'는 '반공국민'을 의미했고 '빨갱이'는 반민족, 심지어는 금수(禽獸)와 같이 취급되었다. '반공국민'은 초기에는 미군정의 후원하에 탄생하였고, UN 감시하의 총선을 통해 완결되었다. 반공국민으로서 가장 선도에 선 사람은 '황국신민'의 경력(말하자면 '민족' 콤플렉스)을 가진 사람들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피하여 남하한 월남자들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 '황국신민'으로 앞장섰던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과거활동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우익테러와 '빨갱이사냥'을 감행하면서 '반공국민'의 선두에 섰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저항했던 세력들은 물론 대다수의 순응적인 조선 '백성'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취급하였다.

1948년 제주도 4·3사건 당시 군경·서북청년회(서청)와 제주도민의 관계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와 흡사하다.⁸⁾ '빨갱이' 소탕을 명분으로 진행된 집단학살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동원되었다. 토벌대는 좌익인사와 그 가족은 물론 일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고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겁탈하고 데리고 살기도 했으며, 여자들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들에게 몸을 내맡겼다. 집단학살과 강간은 함께 진행되었다.⁹⁾ 이것은 민족 혹은 국민이라는 정치공동체 내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정복전쟁의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이 '신민'의 지위로 전략했던 일제하에서도 이러한 야만적 폭력은 없었다. 그

7) 이승만, 「평양동포에 대한 훈화」, 1950. 10. 29.

8) 서청은 공산당세력 소탕을 '평정'이라 불렀다.

9) 오금숙, 「4·3을 통해 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 4·3 50주년 기념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8면.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형성, 즉 국민형성이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의 최전선에서 좌우익의 적대과정중에 이루어지고, 민족부르주아가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이 ‘반공국민’으로 변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좌익의 혐의를 받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공체제 아래에서 일상적 감시, 연좌제, 사회적 편견과 멸시로 고통을 당했다. 즉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것이다. 좌우익 양측이 아직 백성 혹은 신민의 정서밖에 갖지 못한 ‘보통’의 동포들에게 강요했던 ‘국민’ 자격심사는 이렇게 테러와 폭력, 학살을 동반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보도연맹 결성을 통한 부역자 전향작업과 전쟁 직후 이들에 대한 대량학살, 전쟁 후 서울에서 피란갔다가 서울로 다시 들어온 ‘도강파’의 ‘잔류파’에 대한 사상심사, 전시에 거창·산청·함평 등지에서 벌어진 군경에 의한 무수한 양민학살, 노근리·왜관·마산 등지의 미군에 의한 주민살해, 반공포로의 석방을 둘러싼 국내의 갈등 등은 모두 ‘국민’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었다. 오직 사상적으로 의심받지 않는 반공국민만이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동포’들은 원수 심지어는 짐승처럼 취급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좌익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혈통주의적인 사상과 실천이 분단국가 건설을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형성은 통상 국가형성의 기반으로서 같은 종족, 동일한 민족이라는 공통성이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규정에 의해 무시·압도당한 데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의 아들딸’이라는 한국에서의 국민 개념은 좌익을 다른 인종 혹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그것이 ‘좌익사냥’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종주의 혹은 혈통주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푸코(M. Foucault)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근대정치 혹은 주권의 근원은 ‘정복자의 권리’와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¹⁰⁾ 한국에서의 ‘좌익사냥’을 통한 국민적 일체감 형성과정 역시 분명 근대적 국민형성의 한 과정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나찌즘에서 보듯이 국가가 만

10)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85~107면.

주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을 때 국가의 정당성은 더욱더 이러한 인종주의에 근거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위상은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는 개인’의 집합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전쟁 전후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무고하게 학살당한 주민의 가족들도 ‘국민’으로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침묵하였다. 대략 1980년까지 이들은 연좌제 등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하였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천민이자 노예였다. 누구도 이들의 재산을 빼고 정조를 유린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과거 하층민에 속해 있었거나 친일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겼듯이, 이들도 자신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떠났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한 ‘반공국민’의 형성은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 의의를 갖는데, 그것은 전쟁과 피란의 와중에서 전국 13도의 상이한 출신과 신분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온통 한데 섞여 살아보았다는 경험이다. 즉 전쟁은 신분제의 철저한 해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처지에 있는 국민으로 일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국민’형성의 기반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수립 후 도입된 ‘국민학교’ 의무교육제, 국민개병제, 정부수립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확보된 보통선거권과 주민들의 선거참여 경험,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세력의 거의 완전한 소멸 등은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갖게 해준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이제 신분적인 차별에 신음하지 않게 되었으며, 시장경제와 교육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관리가 되고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상의 혈맹’: 미국과 한국

휴전 직후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군정에서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장택상(張澤相)은

“대한민국 주권을 군정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제연맹에서 탄생시켰고, 동시에 국제연합에서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주권을 찾은 것이지, 미군정으로부터 받았다든지 혹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았다든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착각”¹¹⁾이라고 반박하였다. 이것은 실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론이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승인한 것이라는 국제법적인 논리를 의문시한 사례이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한국의 군사와 경제는 미국에 의해 지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의 최초의 행동은 일본의 매카서(MacArthur)에게 전화해 항의한 일이었다. 국민의 대표자 이승만에게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줄 구세주였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자유진영이라는 가상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한 것이다. 연합국과 미국은 바로 운명의 공동체성을 갖는 ‘자유진영’으로 불렸다. 그것은 전쟁을 당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전제 위에서 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반공국민’과 ‘빨갱이’ 간의 대립구도는 곧 ‘자유세계’의 두 주역인 미국과 한국의 유대, 나아가 미국인과 한국인 간의 ‘피를 나눈 유대’(혈맹)라는 정치적 수사와 표리관계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유진영’ 주민으로서 갖는 가(家)의 유대감은 거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미국인의 아버지시오. 이승만의 아버지시오. (...) 미국사람과 한국사람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형제가 난을 당할 때 형제가 와서 구원한다”¹²⁾는 표현도 당시 한국 지배층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어느정도 표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반공국민’의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발발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 ‘세계 최강의 우방 미국’이 진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구원’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혈맹은 아니었으며, 최

11) 장병해, 『상록의 자유혼—창랑 장택상 일대기』, 영남대학교 박물관 1973, 389면.

12) 김인서, 『망명노인 이승만을 변호함』, 신앙생활사 1963, 64면.

근 속속 드러나는 전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한국인과 북한인을 각각 좌·우익으로 보기보다는 작전상 필요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그 생명과 재산을 쉽게 무시해도 좋은, 열등한 황인종으로 보았을 따름이다. 한편 전쟁의 발생지점은 분명히 한반도였고,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자유진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주한 미국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피란을 갔으나 한국인들은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자유진영’이라는 것은 결국 냉전질서하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지배층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침공으로 가장 큰 실체적 위협에 처한 이승만과 남한 지배집단이 설정한 ‘상상의 혈맹’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국민총화’: 감시받고 통제당하는 국민

일제하 그리고 전쟁 전후 국가형성 과정에서 성립된 ‘혈통주의적’ ‘전체주의적’ 국민 개념은 국가기구의 확장과 정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새로운 면모를 띠기 시작하였다. 1972년의 유신 통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남한 내의 자생적 ‘좌익’에 대한 국민적 경계가 일상화되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자’ ‘침투간첩 잡아내어 적화야육 분쇄하자’는 표어들은 온 국민의 신고요원화를 강조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들을 의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국민총화’라는 개념으로 집약된 70년대의 국민 개념은 국민구성원 사이의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파시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일상적 의심과 감시는 주민등록증 소지의 의무화로 제도화되었다. 즉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제만큼 한국국민의 성격과 지위를 잘 보여주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주민등록제가 처음 실시된 1962년에는 말 그대로 주거등록, 즉 본적지에서 30일 이상 이탈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었으나, 이

13) 선우기성, 『어느 운동자의 일생』, 배영사 1987, 94면.

는 점차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했다가 급기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아닌 개인식별 코드가 부여된 개인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1975년 3차개정 때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범 경찰관리가 간첩 색출, 범인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신원과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등록제도, 전국민에게 고유불변하는 번호를 부과하는 고유번호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제도를 모두 포함한다.¹⁴⁾ 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생활공동체와 동떨어진 호적제도에 기초하여 개인별 식별번호를 부과하는데, 이는 가장 완벽한 국민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이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국민등록제’로서 온 국민으로 호주 통솔하의 배타적 가족구성원이자 국가 내의 단일한 운명공동체로 편입될 것을 강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가공할 국가통제 기제이다. 더욱이 한국국민은 거주자로서의 증명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간첩 혹은 용공분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입증해야만 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공식식상에서 충성된 국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서약해야 했다. 이 충성서약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70년대 들어 정점에 이르렀다. 즉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 암송, 매일 오후 5시 하기식에서의 행동정지와 국기에 대한 경례가 그것이다. 국민의 충성서약은 주민등록제도가 의거하는 바, 안보와 간첩식별의 목적하에서 정당화된다. 그것은 한국이 사실상 전시체제와 ‘총력’국가안보 체제에 놓여 있다는 상황논리에

14) 김기중, 「국가의 국민관리체제와 인권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발표논문, 1999.

의해 뒷받침되는 셈이다.

전쟁과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신과 경쟁하는 국가 내의 사회집단이나 국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대항집단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국가는 국민들에게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된다. 국가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이제 국가에 거역하는 사람은 전근대 시절의 대역죄인처럼 취급된다. 국민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근대국가의 이상은 헌법의 조문에만 남아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던 시점에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붕개량사업을 거부할 권리도 없었고, 통일벼가 아닌 다른 벼를 심을 권리도 갖지 못하였다. 주권의 대행자인 대통령은 사실상 백지위임장을 부여받은 존재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국민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없었다. 이처럼 국민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어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세력 및 노동자의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데 공식적으로 동원된 논리는 7,80년대 내내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도 ‘빨갱이’ 담론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국가건설기의 강압적 국민형성 논리는 7,80년대의 새로운 저항세력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언제나 ‘황국신민’임을 거부하는 조선인들에게 가해지던 철퇴, ‘국민’보다는 ‘민족’ 논리를 선호하던 ‘희색분자’들에게 가해진 폭력, 가족구성원과 이웃의 ‘불순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도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던 극우파시즘의 논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그러하였듯이 국민관리는 언제나 개인을 가족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가장의 지휘를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데모에 가담한 학생, 쟁의에 가담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가장 일차적인 통제가 ‘자식’감독에 대해 추궁받은 부모들의 압박과 호소였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시당하고 의심받는 국민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신민의 태도가 몸에 배도록 강요된 국민들에게 ‘주체’로서의 자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 생활세계에까지 침투하는 사회에서 ‘사적인

영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적인 것이 곧 국가적인 것의 내부에 무한정 침입하는 상황을 불러온다.¹⁵⁾ 이러한 국가에서 의심하고 감시하는 주체인 지배층 역시 자신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실은 이기적인 존재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사실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내면적 충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남겨놓지 않는 국가주의의 비극적인 귀결이다. 결국 감시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동원과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국민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배반당하기 쉽다. 그 서슬퍼런 유신시절에 가장 심각한 부패와 불법이 존재했던 사실이 이것을 말해준다.

5. '국민'의 딜레마

'다른 국민': 민중

한국의 국가가 틀을 잡기 시작하면서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민'이 갖는 이러한 한계, 헌법에서 명시된 '각인의 자유·평등·창의를 존중한다'는 조항과 현실의 괴리가 도처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빨갱이'가 완전히 제거된 지 20여년이 지난 1970년대 한국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국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형성된 노동자·빈민이라는 집단이었다.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국민으로 취급되었고,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2등국민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스스로 노동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국민이고 참정권을 갖고는 있다. 그러나 생계를 해결하기 위

15) 마루야마 마사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51면.

해 식모, 다방레지, 양장점 점원, 제품공장 노동자, 전자회사 직원이 되어 감옥살이의 길¹⁶⁾을 선택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시민’이었으나 일터에서는 예속된 존재였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작업장에서 떠들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자유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도 사용자의 위로와 동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만약 이들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제와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상 국가 내의 ‘다른 국민’이었다.

빈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60년대말 이후 도시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게 된 이들은 재개발정책이 입안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삶의 공간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이들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거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토지 없는 국민들에 대한 주택정책 없이 토지소유자·건축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이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 재개발정책은 자본의 독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한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행태였다. 7,80년대 노동자와 빈민의 언술 속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에 대한 의심이었다.¹⁷⁾

‘비국민’: 한국 내의 외국인들

90년대 들어 엄청난 수의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기업들은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 진출하여 현지주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였다. 그중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속에서 탈북자들이 대거 남으로 몰려들어왔다.

16)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년 11월호, 180면.

17) “말로만 떠들어대는 노동정책의 허구성, 허울좋은 국민대화합, 정치하는 놈들만, 뺨있는 놈들만, 이름난 놈들만 아 나라의 국민이고 이름없고 배우지 못하고 뺨없는 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더냐.”(이판돌 외 지음, 『외쳐라 천만 노동자여—한영 알미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새길 1988, 130면)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아 나라의 국민이고 죄없이 가난에 떨어진 사람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1978년 이른바 ‘무등산 타잔사건’의 박홍숙의 최후진술)

이 과정에서 민족성과 국적성은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거주 화교에 대한 멸시와 차별, 미군의 사생아인 혼혈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90년대 이전에도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한국인들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인한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과 폐쇄적 민족주의는 한국인 일반의 태도이기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국민’ 개념과 속인주의(屬人主義)적인 국적법에 기인하는 것이며, 역사·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 개념의 극우적·보수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초부터 한국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취득을 ‘출생 당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규정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혈통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신분등록제 호적은 ‘가족’별 편제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일본의 혈통주의적 ‘국민’ 개념이 전후 재일한국인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차별화해온 것과 동일한 논리구조에 있다. 즉 한국의 국민 개념, 국민의 기초는 빨갱이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제, 식민지적 호주제도를 통한 국민관리제도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폐쇄성이 국민에 대한 절대성·보편성과 동일한 궤를 이루며, 그것이 오늘날 국내 외국인에 대한 비관용적·배제적 성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재일교포 문제가 일본 국가의 ‘그림자’이듯이,¹⁸⁾ 오늘날 한국 내의 소수 민족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들, 탈북자들은 한국 국가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이들을 ‘비국민’으로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한국의 혈통주의적·가부장적 ‘국민’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국민’ 개념은 그 극우적 성격과 더불어 ‘상상의 혈맹’ 개념, 구체적으로 미국 혹은 백인에 대한 추종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배타성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국민, 특히 동남아 출신자들에게만 주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타성은 실제로 권력에 대한 복종성과 동전의 양면을

18)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창작과비평』 1998년 겨울호.

이룬다. 권력에 굴종하는 주민들은 약자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 된다.¹⁹⁾ 강자에 대한 추종과 약자에 대한 멸시나 공격성은 모두 ‘상처받은 영혼’의 표출이며, 혹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보지 못한 ‘신민’의 퍼스널리티가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국민’이 ‘시민’적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민’적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맺음말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바치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어디 멀리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²⁰⁾을 가질 자유와 용기가 있는가? 서양의 철학·정치학에서 나온 근대국가론, 민주주의 이론, 주권론, 국민의 이론은 단연코 그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에 사는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구성원은 ‘적’으로 의심받고 국가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당장 북으로 올라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구적인 국민 관념은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반공국민론’ ‘상상의 혈맹론’ ‘혈통주의적 국민론’과 그것의 사회적 기초를 이루는 식민지적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해명되지 않는다.

20세기 내내 우리는 ‘국기를 그려야 하는’ 시대에 살았다. 한국의 헌법에는 주권이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간 우리는 그에 걸맞은 시민적·민주적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투표에 참가해서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에 복종해야만 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국민’은 한층 피부에 와닿는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늘의 김대중정부는 드디어 ‘국민의 정부’라고까지 자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뒤집어보면 과거의 정부가 진정한

19) 박경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1999년 가을호.

20)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69면.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다는 말도 된다.

오늘날 우리가 금과옥조로 믿어온 ‘국민’이라는 ‘가상의 공동체’의 상대성과 한계는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는 좀더 전통적인 범주인 전쟁 전후의 피학살자들, ‘좌익’ 혐의를 받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 외에도 노동자, 여성, 재일·재중 교포, 한국 내의 소수민족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궤적들은 ‘국민’의 개념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의심이 위협시되었다. 우리에게 ‘국민’은 어쩌면 ‘강요된 공동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의 독특한 근대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통일의 과정에 만족할 수 없고, 식민지화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한반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재중·재소·재일 한민족의 정신적 공동체 형성 및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지난 50여 년간의 국가수립 과정이 그 성과만큼이나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같은 국민 형성과정에서 인간해방을 위한 한 ‘과정’이었을 뿐, 결코 종착점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우리는 21세기적인 새로운 인간공동체, 새로운 정치단위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